# 심 사 보 고 서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83

2024. 7. 18. 도시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0. / 이진환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 2024. 7.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7. 18.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폐지와 함께 공공청사 및 공공공원·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제도와 주차요 금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공청사, 공공시설, 공공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및 유료 운영시간을 규정함. (안 제25조, 제26조)
-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7조, 제28조)
-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과 주차요금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9조, 안 별표 1의2)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 '공공 부설주차장'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의2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25조와 제26조에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을 정하는 등 적절한 요금 부과를 통해 주차 수요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1에 공공청사와 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요금표를 신설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재산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는 폐지하였고, 부칙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별 조례에서 운영 중인 주차요금 관련 조문을 함께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그동안 주차 관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차요금 징수 근거가 없어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에게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 답변 요지

O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O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O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